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

런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책관등”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중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21호”로 한다.

1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1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1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15.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6.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20.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제18조제2항 후단 중 “22명”을 “24명”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3(중전의 제23조의2)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각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로 한다.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둔다.

② 가상자산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29”를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4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3급 또는 4급 이하 “203”을 “218”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3제6항 관련)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4년 10월 1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2. 가상자산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4급 이하	8

3. 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이하	7

[별표 5]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 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 에 <u>정책관등</u> 1명을 둔다.	제12조(금융정책국) ① ----- ----- -- 「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 제12조에 따른 <u>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융산업국) ① 금융산업 국에 국장 1명을 <u>둔다</u> .	제13조(금융산업국) ① ----- ----- <u>두고, 국장 밑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u> .
② <u>국장</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국장 및 정책관등</u>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u>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 분야 정책의 수립·총괄</u>
<u><신 설></u>	13. <u>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 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u>
<u><신 설></u>	14. <u>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 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 개선</u>

<u><신 설></u>	<u>15.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u>
<u><신 설></u>	<u>16.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u>
<u><신 설></u>	<u>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u>
<u><신 설></u>	<u>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u>
<u><신 설></u>	<u>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u>
<u><신 설></u>	<u>20.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u>
<u><신 설></u>	<u>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u>
<u>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22. ----- 제21호-----</u> ----- ----- -----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금융혁신기획단을 둔다.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4명 -----

-----.

<삭 제>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 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 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4.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5.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6.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9.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 등록 · 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 감독

10.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
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 · 감
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금융혁신기
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
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
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가상자
산과를 둔다.

② 가상자산과에 과장 1명을 두

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감독·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 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 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
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
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
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
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
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

	<u>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④ <u>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u> ⑤ <u>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u>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4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가상자산사업자</u>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가상자산사업자</u>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u>가상자산사업자</u>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u>제23조의3(제도운영기획관 등) ①</u>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u>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u> ----- 2. (현행과 같음) 3. <u>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u> ----- 4. <u>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u> ----- --- 5. ~ 7.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u>제24조(한시정원) 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u> <u>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 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둔다.</u>	⑥・⑦ (현행과 같음) <u>제24조(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9</u>	<u>245</u>	+16
•	•	•	
•	•	•	
일반직 계	<u>227</u>	<u>243</u>	+16
고위공무원단	<u>8</u>	<u>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3</u>	<u>218</u>	+15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